

2024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일반)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도내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2024년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1.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이란?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경기주택도시공사(GH공사)가 해당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입니다.

2. 사업지역, 공급호수, 대상주택, 지원한도

- 사업지역 : 경기도 31개 시·군
- 공급호수 : 3,000호 (24년 국토교통부 공급계획 승인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역별 공급호수

구분	가평	고양	과천	광명	광주	구리	군포	김포	남양주	동두천	부천
일반	30	300	10	60	100	50	50	50	150	50	200
구분	성남	수원	시흥	안산	안성	안양	양주	양평	여주	연천	오산
일반	200	240	100	230	40	180	50	60	40	10	40
구분	용인	의왕	의정부	이천	파주	평택	포천	하남	화성		
일반	140	30	150	40	90	120	50	50	90		

※ 지역별 공급호수는 접수결과 등에 따라 변동 가능(국가유공자 공급호수 포함)

- 지원가능 주택(경기도 소재 주택)
 - 전용면적 85㎡이하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및 오피스텔)으로서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이 가능한 주택. 단,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는 전용면적 85㎡ 초과 가능 (단, 입주 시까지 대상주택에 전입 가능해야 세대원으로 인정)
 - 오피스텔은 바닥난방이 되고, 별도로 세면·취사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지원 가능(전입신고 가능해야 함)

- 일반업무시설은 건축법 별표1 14호 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임이 별도로 확인되어야 함, 현재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해서도 임대인이 동의하고, 부채비율 등 지원요건에 부합할 경우 지원 가능
 - ※ 부채비율(전세지원금 포함 총부채/주택가격)이 90%이하인 주택만 지원가능
 - ※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대상 주택을 물색해야 함(직거래 불가)

< 지원불가 주택 >

- 입주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 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로 이용되는 경우. (예) 1동의 건물 중 지층 매점, 1층 사무실, 2층 주택인 경우 주택인 2층만 가능
- 건물 및 토지가 경매 또는 공매 개시가 된 경우
-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 단, 토지와 건물 소유자 모두(공유인 경우 공유자 전원)와 주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건물사용자가 토지사용에 대한 권리(지상권)를 확보한 경우 또는 토지 지분을 일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소유자와 주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가능
- 등기부등본상 압류·가압류·가등기 및 소유권 행사에 제한이 되는 가처분, 예고 등기 등이 있는 경우 (권리관계 말소 후 신청 가능)
- 미등기 상태인 경우.
 - 단, 건물이 임대인(집주인) 명의의 등기가 되어있는 택지개발 사업지구 및 구획정리 사업지구는 가능(분양계약서 등만으로는 지원 불가)
- 국민임대·영구임대 등 임대아파트
-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인 주택 /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 신탁등기가 되어 소유권 확인이 불분명한 주택의 경우
- 다중주택
- 기타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심사결과 채권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 지원한도 : 호당 1억3천만원(주택도시기금 운영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 해당액은 입주자가 부담하며, 지원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추가부담액을 입주자가 부담하면 지원 가능함. 단, 전세금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됨

3.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청자격 및 순위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 공고일(2023.12.15.) 현재 사업대상 시·군에 거주하는(주민등록표상 등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분
 ※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의 정의에 따른다.

대상	유형	자격요건
1순위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 포함)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수급권자) 또는 제10호(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소득 대비 임차료(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 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의 비율이 30% 이상인 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분(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중증)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분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시행규칙」 제13조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고령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수급권자) 또는 제2조제10호(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고령자
2순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분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분(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중증)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분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기타	국가유공자 등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공공주택 특별법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전세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확인사항																									
무주택세대 구성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아래의 분을 말합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공급신청자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소유여부, 소득·자산산정,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확인은 주택공급신청자 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를 대상으로 합니다.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table border="1"> <tr> <td>외국인 배우자</td> <td>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외국인 배우자(외국인 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td> </tr> <tr> <td>외국인 직계 존·비속</td> <td>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td> </tr> <tr> <td>태아</td> <td>세대구성원의 태아</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로 공급신청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 체결시 법정대리인 동의 또는 대리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 세대주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외국인 배우자(외국인 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	외국인 직계 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	세대구성원의 태아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외국인 배우자(외국인 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																								
외국인 직계 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	세대구성원의 태아																								
소득기준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단위:원)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1인 가구</th> <th>2인 가구</th> <th>3인 가구</th> <th>4인 가구</th> <th>5인 가구</th> </tr> </thead> <tbody> <tr> <td>50%</td> <td>2,347,719</td> <td>3,003,226</td> <td>3,359,099</td> <td>3,811,028</td> <td>4,020,246</td> </tr> <tr> <td>70%</td> <td>3,018,496</td> <td>4,004,301</td> <td>4,702,739</td> <td>5,335,439</td> <td>5,628,344</td> </tr> <tr> <td>100%</td> <td>4,024,661</td> <td>5,505,914</td> <td>6,718,198</td> <td>7,622,056</td> <td>8,040,492</td> </tr> </tbody> </table> 기존주택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2021.05.01.)에 따라 1인가구 20%p, 2인가구 10%p 기준소득에 상향 적용된 금액임.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발표 기준(2023년 공공주택입주자 소득 및 자산기준)이며 변동 시 변동 기준 적용 가구원수는 세대구성원 전원(태아포함)을 말함 월평균 소득은 세전금액으로 세대구성원의 월평균 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6인 이상 가구는 5인가구 소득기준에 1인당 평균금액을 합산하여 산정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50%	2,347,719	3,003,226	3,359,099	3,811,028	4,020,246	70%	3,018,496	4,004,301	4,702,739	5,335,439	5,628,344	100%	4,024,661	5,505,914	6,718,198	7,622,056	8,040,492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50%	2,347,719	3,003,226	3,359,099	3,811,028	4,020,246																				
70%	3,018,496	4,004,301	4,702,739	5,335,439	5,628,344																				
100%	4,024,661	5,505,914	6,718,198	7,622,056	8,040,492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25,500만원 이하 해당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683만원 이하 상기 금액은 공고일 현재 발표 기준이며 변동 시 변동 기준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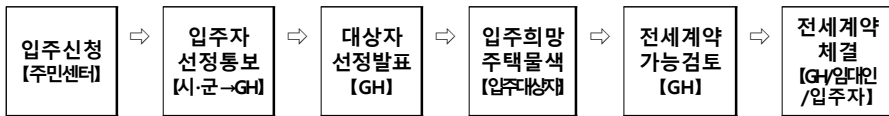
동일 순위내 경합 시 우선순위 결정방법

공급신청서 상의 배점 항목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되, 합산한 점수가 같을 경우 ④, ⑤ 항목의 합이 높은 순서대로 입주대상자를 선정. 제4항과 제5항의 가점 합계점수가 동일할 경우 해당 시·군의 전입일이 빠른 순서대로 입주자 선정(말소한 경우 재전입일 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① 입주자 선정기준일 현재 신청인의 당해 시·군 지역에서의 연속 거주기간	가. 5년 이상 나. 3년 이상 5년 미만 다. 3년 미만	3점 2점 1점
② 부양가족의 수 (신청자 본인을 제외한 무주택세대구성원)	가. 3인 이상 나. 2인 다. 1인	3점 2점 1점
* 별도 가점 ※ 미성년자녀 :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 ※ 중증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미성년 자녀 2명 미성년 자녀 1명	3점 2점 1점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부양(신청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에 한하며,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1점
	- 중증장애인(신청인 포함)	1점
③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 (인정회차 기준, 신청인 명의의 통장만 인정)	가. 24회 이상 납입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납입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납입	3점 2점 1점
④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별지 5]에 따른 비정상거처거주확인서가 교부된 경우	비정상거처거주확인서 교부 여부	2점
⑤ 입주자 선정기준일 현재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임차료는 주거급여액 차감 후 금액을 의미하며, 부양의무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료는 배제	가. 80% 이상 나. 65% 이상 80%미만 다. 50% 이상 65%미만 라. 30% 이상 50%미만	5점 4점 3점 2점

4. 신청절차, 기간 및 장소

□ 신청절차



□ 신청기간 : 2024. 01. 08.(월) ~ 01. 19.(금)

□ 신청장소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3. 12. 15.)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

- ※ 1순위·2순위 동시 접수하며, 토요일·일요일은 신청접수를 받지 않음
- ※ 입주자로 선정되어도 기금 예산 소진시 지원이 조기 종료될 수 있음

5. 신청시 구비서류

□ 모든 발급서류는 공고일(2023. 12. 15.) 이후 발급분에 한함

구분	구비사항	비 고
공통 준비 사항	① 공급신청서(접수장소 비치)	
	②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접수장소 비치)	
	③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상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배우자 주소가 분리된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주민등록등본으로 해당 지역 거주기간 확인 불가시 주민등록초본 추가 제출)
	④ 신분증	- 본인 및 가족 신청 시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 가족 외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의 신분증과 본인의 위임장 제출
	⑤ 자격확인서류 (해당시 제출)	- (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증명서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 -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확인서, 복지대상급여(변경) 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⑥ 평가항목 구비서류 (해당시 제출)	가. 가구구성원 중 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 증명서류 나. 청약통장 순위확인서(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한함) ※ 발급기준일 : 2023. 12. 15.(주택관리번호 : 2023980112) ※ 청약 가입은행 또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https://www.applyhome.co.kr)에서 인터넷 발급 가능(2024. 01. 08. 개시 예정) 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별지 5]에 따른 비정상거처거주확인서 라. 주택임대차계약서 1부(확정일자가 날인된 계약서만 인정)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임대차계약서도 가능
장애인 및 2순위 대상자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접수장소 비치)	- 자산기준 충족여부 확인 공고문 하단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작성 후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 만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 서명
	자산보유실태확인서 (접수장소 비치)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능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해당사항 없는 경우에도 해당여부에 "아니오" 기재하여 필수 제출)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6. 입주대상자 발표

- 일시 : 신청접수일로부터 약 3개월 이후(자치체 통보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함)
- 장소 :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www.gh.or.kr) 게시 및 입주대상자 개별 통보

7.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 임대조건
 - 1) 임대방식 :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
 - 보증부월세의 한도는 월 60만원 이하이며, 입차료 지급보증 시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주자가 보증금으로 부담하고 계약가능
 - 2) 임대기간 : 2년
 -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1순위는 횡수 제한없이, 2순위는 14회 재계약 가능. 단, 재계약시점에 적용되는 소득 및 자산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재계약이 불가하거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 재계약 당시 만 65세 이상 또는 중증장애인 계약자는 재계약 횡수를 제한하지 않음
 - 3) 임대보증금

지원한도액		13,000만원	
부담 기준	공사	지원기준금액 범위내 전세보증금의 95%	12,350만원
	입주자	지원기준금액 범위내 전세보증금의 5%	650만원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초과하는 보증금을 입주자가 부담**

- 4) 임대료 : 임대보증금에서 입주자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부담

지원금	4천만원이하	4천만원초과~6천만원이하	6천만원초과
금리(연이율)	연 1%	연 1.5%	연 2%

* 생계·의료수급자 및 미성년 자녀수에 따라 우대금리(0.2%p~0.5%p) 적용(단, 최저금리 1%)

- 5) 임대조건 산정 예시 * 입주자보증금 및 월 임대료 입주자 부담

전세 (기본금리)	임대보증금 1억3,000만원 주택을 임차한 경우 ◦ 입주자보증금 : 650만원 ◦ 월임대료 : [(전세금-입주자보증금) × 연 2% ÷ 12] = [(1억3,000만원 - 650만원) × 2% ÷ 12] = 205,830원
전세 (우대금리)	생계·의료수급자(0.2%p)이며 미성년 자녀가 1명(0.2%p)이고 임대보증금 1억3,000만원 주택을 임차한 경우 ◦ 입주자보증금 : 650만원 ◦ 월임대료 : [(전세금-입주자보증금) × 연 1.6% ÷ 12] = [(1억3,000만원 - 650만원) × 1.6% ÷ 12] = 164,660원
보증부월세	임대보증금 1억3,000만원, 월세 30만원 주택을 임차한 경우(지급보증시) ◦ 입주자보증금 : 740만원(기본 650만원+3개월분 월세 90만원) ◦ 월임대료 : [(전세금-입주자보증금) × 2% ÷ 12] = [(1억3,000만원 - 740만원) × 2% ÷ 12] = 204,330원

8. 입주자격 확인

- 입주대상자의 자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입주자격을 확인하고 최종 입주대상자를 선정하여 경기주택도시공사로 통보 예정
 - 1) 자격확인 : 무주택 여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소득 50%이하 가구(자산기준 충족 여부), 소득 70%이하 및 100%이하 장애인(자산기준 충족 여부) 가구 해당 여부
 - 2) 소득조회 항목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자산 설명 참고

소득유형	세부항목
근로소득	①상시근로소득, ②일용근로소득, ③자활근로소득, ④공공일자리소득
사업소득	⑤농업소득, ⑥임업소득, ⑦어업소득, ⑧기타사업소득
재산소득	⑨임대소득, ⑩이자소득, ⑪연금소득
기타소득	⑫공적이전소득

* 주택, 소득, 자산 및 자동차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통보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타시행자(LH 등)의 기존주택전세임대와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임대주택 거주자도 신청 가능하나, 우리공사 및 타공사(LH 등)의 공공임대주택과 중복 지원받을 수 없으니 해지절차를 밟으셔서 계약체결 시 당해 임대주택 해지 신청서, 퇴거확인서(기퇴거자의 경우) 등 해약관련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후 **선정되기 전에 타 시·군으로 전출하실 경우 자격조회가 불가하므로 신청취소**로 처리됩니다.
- 기 대출받은 **주택도시기금(본인과 배우자(세대분리 배우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있을 경우에는 전세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상환**하여야 합니다.
- 부채비율(전세지원금 포함 총부채/주택가격)이 90%이하인 주택만 지원가능하며 신청자의 직계 존·비속 소유의 주택은 대상주택에서 제외됩니다.
- 전세사기 방지 등을 위해 **임대인이 서울보증보험 등의 전세금상품 보험사고자인 경우 계약이 제한**되오니 이 점 참고하시어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예비자 포함) 계약상황을 고려하여 후순위 추가예비자를 발표할 수 있습니다.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별도 안내된 기간 내에 전세주택을 구하여 우리 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입주대상자 중 공사의 전세임대 또는 매입임대를 기존에 지원받았으나 거주기간 중 무단이탈 또는 장기체납, 불법·전매 등의 사유로 공사로부터 계약해제·해지된 경우에는 재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입주대상세대는 지원대상 주택에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는 등 대항력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 전세기간 중 계약자의 사망, 혼인, 이혼의 사유로 명의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및 거주주택에 대한 변경사항(임대인변경, 경매 등)이 생길 경우 즉시 공사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자와 공사간 전세계약 체결 시 계약금은 입주대상자 본인이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고, 잔금은 입주시 공사에서 지급하며, 계약체결 후 입주대상자의 귀책사유로 전세계약이 해제, 해지될 경우 기납부한 계약금은 주택소유자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 전세계약에 따른 법정 중개수수료(입주자 분)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부담하되, 전세금 지원한도액 초과부분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부득이하게 도배·장판 등의 교체가 필요할 경우, 10년마다 1회에 한하여 도배·장판 시공비용을 지원(60만원 한도 부가세 포함금액, 초과비용은 입주자 부담)합니다.
- 주택에 대한 하자·보수 등으로 인한 분쟁 발생시, 입주자 본인이 주택의 소유자와 직접 해결해야 하므로 반드시 해당 주택을 직접 방문하여 주택의 상태를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면 중도해지가 어렵고 계약기간(2년) 동안 거주해야 하므로 신중히 주택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잔금은 계약체결 후 공사접수일로부터 최소 4주 후 지급 가능하며,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계약 시까지 입주자격(소득, 자산 및 세대구성 등)을 유지해야 합니다.
- 공사의 동의 없이 전세계약 권리심사 전에 가계약 등으로 발생하는 손해는 공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훈령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을 준용합니다.
- 국토교통부 및 공사 지침 등 개정에 따라 임대조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9. 문의처

- GH공사 콜센터 : 1588-0466

2023. 12. 15.



참고1.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항목 설명	소득자료 출처
근로 소득	상시근로소득	상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1순위)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2순위)근로복지공단 월평균보수 (3순위)국민연금공단 기준소득월액 (4순위)장애인고용공단 보수월액 (5순위)국세청 종합소득금액 ※ 공적자료 우선원칙에 의해 위 자료의 순위에 따라 1가지만 조회됨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국세청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자체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보건복지부, 노동부
사업 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축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농림수산물식품부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 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재산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 기타금품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보건복지부,국민연금관리공단,사학연금관리공단,공무원연금관리공단,군인연금관리공단,근로복지공단,보훈처 등

■ 자산항목 산정방법

자산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임 [소득 및 자산액은 가구원의 합계액을 말함]

구분	산정방법
부동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 소유면적 x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 공시가격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업」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자동차의 가액을 모두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산출한 자동차가액을 포함한 총자산가액 해당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별도의 자동차가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이때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총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금융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일반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임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공공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 자동차 가액 산정방법

구분	산정방법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235호)의 시행에 따라 **입주신청자의 가구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구분	안내사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자산검색 대상 가구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가구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의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 항목은 필수 동의 사항이며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은 선택사항이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기관 등이 금융정보 등의 제공사실을 정보 제공 동의자에게 우편으로 송부함

참고2.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등의 상속증여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 ①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경기주택도시공사)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④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 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⑤ 20㎡ 이하의 주택(20㎡ 이하 주택에 대한 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재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⑦ 무허가 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 제출
-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단,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
-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